

농 촌 진 흥 청

시 정 요 구

제 목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개발시범사업 부가세 환급금 미반환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진주시

내 용

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 체결과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 등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분야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발굴 육성을 위한 “2014~15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(체류형 농촌관광 모델개발)”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」 제53조의제3항에 따르면 “사업 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”으로 하고 있으며

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」 제31조에 따르면 “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.

그런데도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4~15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(체류형 농촌관광 모델 개발사업, 사업비 2014년 290백만원, 2015년 310백만원)을 추진하면서 세부사업으로 추진한 체험용 비닐하우스 3개소(44,850천원) 지원을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1,544,026원(2014년 ○○○농가 996,603원, 2014년 ○○○농가 4,35,132원, 2015년 ○○○농가 112,291원)을 반환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진주시장은

보조사업자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1,544,026원을 반환하시고,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